

1. 사업 목적

- 소비자 반환편의 제고 및 소매점 비용기 회수업무 부담완화 위해 소매점 대상 비용기 무인회수기 설치지원 사업 추진
- 무인회수기 설치 지역 소매점 반환 문화 정착 및 인근 소형 소매점 비용기 반환 관련 민원 감소 기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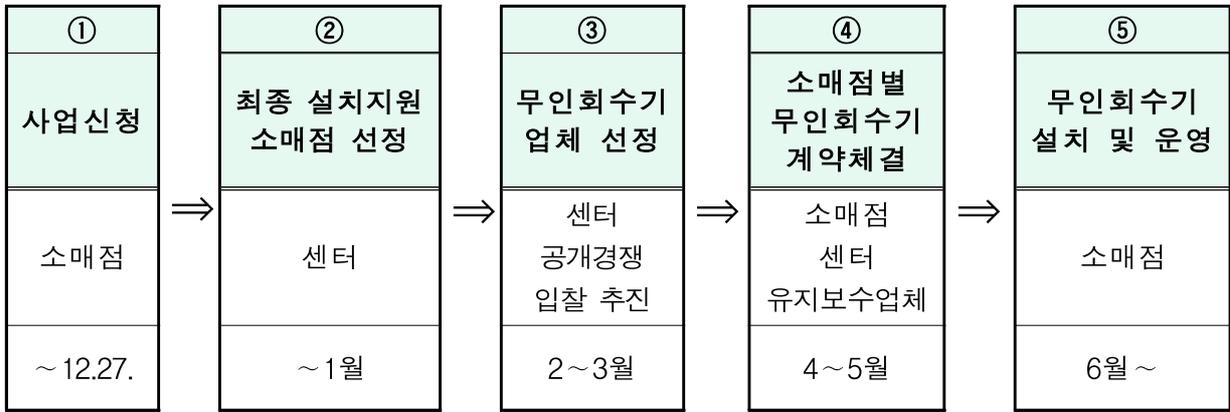
2. 지원 대상

-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보증금대상제품을 판매하는 소매점
- (독립형) 실내 설치 원칙으로, 일 평균 200명 이상 회수 소매점
- (매립형) 부스 실외 설치가 가능하며, 일 평균 600명 이상 회수 소매점

3. 지원 내용

- 지원기기 : 비용기 무인회수기
- 지원 범위
 - 희망 소매점에 무인회수기 기기 구매비용을 분담하여 보급
 - (설치비) 무인회수기 구입비용 일부 지원*(80%)
 - *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분담 비율이 변경될 수 있으며, 센터-소매점 협의 진행 예정
 - (운영비) 무인회수기 운영비* 및 유지보수비용 소매점 전액부담
 - * 설치 후 기기이동 비용, 부스 설치비용(매립형), 전기료 등 소매점 부담

4. 지원절차



* 상기 일정은 수요조사 결과 및 입찰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5. 지원대상 선정

- (선정기준) ① 소비자 반환 편의성, ② 공간 확보 및 기기 설치 용이성, ③ 일 평균 빈용기 회수량, ④ 주변 여건, ⑤ 사업 기대 효과 등
- (선정방법) 평가기준에 따라 접근성, 운영 여건, 평균 회수량, 기대 효과 등을 평가, 상위점수(합계)를 기준으로 대상 선정

6. 사후관리 및 유의사항

- (관리사항) 무인회수기 운영·관리 관련 현장점검 협조, 반환장소 및 지정 안내물 부착, 수거함 비움 등 위생·청소관리
- (운영시간) 소매점 영업시간 내 6시간 이상 무인회수기 운영

* 요일제 운영 등 운영 불가하며 상시 운영 필요

- (운영기한) 설치 확인일로부터 5년간(내용연수 및 감가상각 고려) 운영 및 임의적인 양도·처분 불가

※ 다만,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철거가 필요한 경우 센터와 협의를 통해 처분 가능